

# 교원윤리규정

2005. 3. 1 제정  
<교무팀>

## 제 1 장 일반적 윤리

- 제 1 조 (사명) 고려대학교(이하 ‘대학’이라 한다) 교원은 대학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과 연구에 충실하고, 대학의 명예와 이익을 존중하며, 국가와 사회발전을 선도할 책임을 인식한다.
- 제 2 조 (대학의 명예와 이익존중의무) ① 교원은 학문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는 한도에서 대학의 명예와 이익을 존중하고 우선해야 한다.  
② 교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와 비밀을 적절히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  
③ 교원은 학교의 유·무형의 자산을 보호해야 하며, 이를 사사로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 3 조 (규정준수의무) 교원은 학교법인 정관 및 대학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 4 조 (지위남용금지) 교원은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제 5 조 (교육 및 지도의무) 교원은 학생에게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지도한다.
- 제 6 조 (상호존중의무와 차별금지) ① 교원은 동료교원, 직원 및 학생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.  
② 교원은 동료교원, 직원 및 학생에 대해 성별·종교·국적·장애·사상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 7 조 (성희롱금지) 교원은 동료교원, 직원 및 학생에 대해 성폭력 및 성희롱을 해서는 아니 되며, 이를 묵인해서도 아니 된다.
- 제 8 조 (겸직금지) ① 교원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.  
② 총장의 허가를 얻어 타기관의 비상근직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교육과 연구의 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.

## 제 2 장 강의와 학생지도에 관한 윤리

- 제 9 조 (강의 및 공정한 학사관리의무) 교원은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강의의 내실을 기하며,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기타 학사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 10조 (학생지도) ① 교원은 학생이 기본교양과 품성 및 전문능력과 기술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지도하여야 한다.  
② 교원은 학사지도 등을 위해 학생면담에 정기적으로 응할 수 있어야 한다.
- 제 11조 (연구와 논문지도) 교원은 학생의 연구 및 논문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.

## 제 3 장 연구에 관한 윤리

- 제 12조 (기본의무) ① 교원은 창의적인 연구에 지속적으로 정진하여야 한다.

② 교원은 타인의 지적재산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지적 정직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 13조 (연구사업의 신고와 공개의무) ① 교원은 연구책임자 혹은 이와 유사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학교를 통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교원은 교육·연구 활동에서 혹은 학교의 자산을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특허나 발명 또는 발견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소유권의 귀속은 학교 및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.

제 14조 (연구비 관리) 교원은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.

제 15조 (생명윤리준중의무) 교원은 연구 사업을 수행할 때 생명윤리를 존중하여야 한다.

제 16조 (피연구자의 권리보호의무) 교원은 연구 사업을 수행할 때 피연구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여야 한다.

제 17조 (연구업적 평가자로서의 의무) 교원은 타인의 연구업적을 평가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.

제 18조 (연구업적 보고자로서의 의무) 교원은 자신의 연구업적을 보고할 때 제반 규정에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.

제 4 장 교내외 활동에 관한 윤리

제 19조 (기본의무) 교원은 입시업무 등 학사행정업무에 협조하고 봉사하여야 한다.

제 20조 (교외활동) 교원은 사적으로 행동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할 때에 대학이나 부설 기관을 대표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
제 21조 (교원창업) 교원의 교내외창업 활동은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교육과 연구 활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